

인천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1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양선화, 유병일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창환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2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88,439,630원 및 그 중 287,344,143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11,427,984원 및 그 중

210,332,590원에 대하여 2019. 11. 28.부터,각 2020. 4. 16.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C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15. 10.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원금을 212,5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5. 10. 27.부터 2016. 10. 26.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5. 10. 27. D은행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금액은 208,25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신용보증기간은 2019. 12. 26.까지로 연장되었다.

2) 원고는 2018. 5. 17.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채무에 관한 보증원금을 76,500,000원으로, 보증기간을 ‘2018. 5. 17.부터 2019. 5. 1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2018. 5. 25.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위 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기간은 2020. 5. 15.까지로 연장되었다.

3)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2019. 4. 1. 이후 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각종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피고 회사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이후 소외 회사가 2019. 8. 22. 인천지방법원 2019회합15호로 회생신청을 하고, 피고 회사가 2019. 8. 27. D은행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상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고, 원고는 2019. 11. 28. D은행의 청구에 따라 피고 회사의 제1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210,332,590원(= 원금 208,250,000원 + 이자 2,082,590원)을 지급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소외 회사의 제2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출원리금 77,436,593원(= 원금 7,650만 원 + 이자 936,593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는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받은 425,040원을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대위변제금으로 구상할 금액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잔액은 77,011,553원(= 77,436,593원 - 425,040원)으로 되었으며, 위 대위변제 구상금 425,040원에 대하여 그 상환일까지 발생한 확정손해금은 93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1,374,716원을 대지급금으로 지출하였다가 보증료환급금 등으로 받은 279,322원을 위 대지급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대지급금 잔액은 1,095,394원(= 1,374,716원 - 279,322원)이 되었다.

다.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은 2019. 7. 10. 피고 C와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7. 11. 피고 C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2019. 7. 11. 접수 제12768호로 채권최고액 4,55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배당표의 작성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2021. 4. 20. 경락대금 중 28,034,455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C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하여: 자백, 피고 C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의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288,439,630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10,332,590원 + 이 사건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잔액금 77,011,553원 + 위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지급금잔액 금 1,095,394원 + 위 2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확정손해금 93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2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합계금 287,344,143원(= 210,332,590원 + 77,011,553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11. 28.부터, ②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211,427,984원(=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10,332,590원 + 이 사건 1차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지급금잔액 1,095,394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210,332,590원에 대하여 그 대위변제일인 2019. 11. 28.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4. 16.까지는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상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서인천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된 이후로서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 회사는 2018년도부터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는 2019년에 이르러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2019. 8. 22. 회생신청까지 이른바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연대보증인 피고 B이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무를 부담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8. 22. 및 2019. 8. 27.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에게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9. 11. 28. D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의 대출원리금을 각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각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각 구상금채권은 그 채권이 현실화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함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는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90047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서 채무자인 피고 B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G기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이 법원의 인천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121,959,800원이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의 소극재산은 H조합에 대한 담보대출 1억 5,000만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632,640,000원, 원고에 대한 채무 233,529,000원, D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988,402,000원, I 보증채무 20,203,000원, J 보증채무 56,482,000원 등 합계 3,081,256,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 B이 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 B은 이 사건 제1, 2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주채무자들의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자이고,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불과 약 40일 전에 피고 C에게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B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수익자인 피고 C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은 피고 B의 형인 K으로부터 과거에 돈을 빌린 적이 있는데, 피고 회사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피고 B에게 2019. 7. 8. 3,000만 원, 2019. 7. 9.경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이 2013. 4. 23. K으로부터 4,500만 원을 변제기 2014. 4. 22., 연체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받았다는 내용의 2013. 4. 23.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K이 2013. 4. 23. 피고 C에게 4,46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3,500만 원을 변제기 2020. 7. 10.,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받는다는 내용의 2019. 7. 10.자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 피고 C이 피고 B에게 2019. 7. 8. 3,000만 원, 2019. 7. 9.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9. 7. 15. 피고 C에게 4,5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다는 내용의 2020. 2. 6.자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C이 K에게 4,500만 원 이상의 대여원리금 채무(연체이자 월 3%)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를 보면서 피고 B에게 3,500만 원(이자 월 2%)을 별도로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 2019. 7. 10.자 차용증의 작성일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는 피고 C의 피고 B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점, 피고 B은 이

사건 제2회 변론기일에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를 모두 인정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어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 1)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배당금을 현실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참조).
- 2) 따라서 피고 B, C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피고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지후, 판사 심웅비, 판사 김준영